

# 「2026년 경산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」

경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구인난 해소와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「2026년 경산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## 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경산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
- 사업규모 : 중소기업(소상공인) 18명
- 사업내용 : 경산시 소재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중 경산시 거주중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 인건비 지원 **\*2026년 1월 1일 신규입사자부터 해당**
- 지원내용
  - 중소기업(소상공인) : 1인당 월 70만원, 최대 10개월 700만원 인건비 지원(기업당 최대 3인)

## 2. 신청자격

- 기업(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)
  - 경산시 소재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사업장 중 신중년 근로자를 **정규직**으로 신규채용한 업체
    - 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
    - \*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※ 소상공인 기준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- 2021.03.09 시행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지원제외 업종
  - \* 변호사, 회계사, 약국, 병원 등 전문직종, 금융/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  - \* 일반유희 주점업, 무도유희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  - \*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  - \*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

- **기본급** 최저시급('26년 기준 10,320원)이상 지급 가능 사업장
  - \* 주 40시간 기준 월 기본급 2,156,880원 이상 지급(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제외)
- 기업은 총임금의 최소 40% 이상 부담 필수
-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

### ● 참여자

- 채용일 현재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경산시 거주중인 미취업 신중년
  - \* **사업 참여일 기준**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경산시인 미취업 신중년 근로자, 사업 지원종료일까지 주소지 경산시 유지 필수
- 사업 참여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\* 사업 지원종료일까지 사업자등록 금지 필수

### 3. 제외 대상

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-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)
- 국가 및 자치단체
- 참여대상자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권고사직 및 인위적 감원 발생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- 참여자와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(사업주(대표의)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자 등)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\* 단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-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해당하는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
  - \*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,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 선발
- 정부·지자체·기관 등의 타 재정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(수혜)자(참여기업이 별도 선발·관리하는 인턴 및 기타 유사한 형태 사업에 선발중인 자)
- 2026년 1월 1일 이전 참여기업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(재취업자 참여 제한. 단, 현재 채용일 기준 퇴사 후 1년이 지나고 재취업한 자는 예외 가입 허용)
- 4대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
- 중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장
- 참여신청서 기재사항과 기업 이행사항이 다를 경우 지원 제한
-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
- 비영리기업/단체/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

- 과거 부정수급 적발되어 약정해지 된 사업장
- 기타 경산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-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,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

#### 4. 구비 서류

- 경산시 신중년 고용지원 참여신청서
- 근로자 및 사업체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지원 요건 확인서 및 서약서
- 표준근로계약서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- 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
- 주민등록등본(참여자)
- 중소기업확인서
- 외국인등록증사본(외국인 근로자에 한함)

#### 5. 현장점검

-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현장점검을 위해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현장점검 시 참여자격 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